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1328

2023. 12. 19.
주택공간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23. 10. 13. 박승진 의원 발의 (2023. 10. 23.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데이터 활용과 제공,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7항 신설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오정균)

■ 개정안의 주요내용

○ 이 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확대를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**“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”**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려는 것으로, 박승진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.

<개정안 주요내용>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⑥ (생 략)	**제9조**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■ 검토의견

○ 디지털정책관(빅데이터담당관)은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, 빅데이터 분석 및 민·관 데이터 융합개발·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,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)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“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(이하 **‘빅데이터위원회’**)를 구성·운영 중에 있음.

- ‘빅데이터위원회’는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8조[1] 및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[2]와 관련된

1) **제8조(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

사항 등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해 시장이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제12조(**붙임1** 참고)에 따른 '위원회의 존속기한'이 현행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 디지털정책관 소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.

- 참고로, 현재 디지털정책관에서 구성·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4개로, 이중 빅데이터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음.

<디지털정책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>

위원회명	근 거		존속기한
	법률	조례	
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	없음	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	'27.7.12.
서울기록관리위원회	없음	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	'27.12.31.
스마트도시위원회	없음	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	'27.12.31.
빅데이터심의위원회	없음	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	없음

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, 전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.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
2.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
3.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
4.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**제7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
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
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
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
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·협력 방안
6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먼저, 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, 빅데이터위원회는 설치 이후 현재('18.3.~'23.6.)까지 총 7회 개최되었는데 '21년도까지는 매년 1회 개최되었으나 '22년도부터 연 2회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.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,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·자문 안건이 점차 확대된 것에 따른 것임.

- 그러나, 운영실적 증가와 달리 심의위원 참석률은 평균 58.7%(8~9명)로 저조한 실정이며, 제3차~5차 회의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이 단 1명만 참석하였고 제7차 회의에는 위촉직 외부위원이 5명만 참석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되는바,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에 앞서 심의위원의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.

<빅데이터위원회 위원 참석률>

구 분	제1차 회의		제2차 회의		제3차 회의		제4차 회의		제5차 회의		제6차 회의		제7차 회의	
	내부	외부	내부	외부	내부	외부	내부	외부	내부	외부	내부	외부	내부	외부
참석자 수	3명	6명	3명	5명	1명	9명	1명	7명	1명	7명	2명	9명	3명	5명
	총 9명		총 8명		총 10명		총 8명		총 8명		총 11명		총 8명	
참석률	60.0%		53.3%		66.7%		53.3%		53.3%		73.3%		53.3%	

※ 빅데이터담당관 내부자료 재구성

<빅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, 운영실적>

위원회 기능	1.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.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·점검에 관한 사항 3.「공공데이터법」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.「공공데이터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,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.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,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,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위원 구성	▸ **총 15명 위촉** – 당연직 4명(디지털정책관, 교통기획관, 환경기획관, 안전총괄관) – 위촉직 11명(서울시의원,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및 교수 등)

위원 자격	▸ **서울시 공무원, 서울시의회 추천 시의원,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**
위원 임기	▸ **2년**(1회 연임 가능)
존속기한	▸ **명시되지 않음**
운영실적	▸ **2018.3.29. 1차 위원회 개최** –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빅데이터 시행계획 심의 – 공표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적정성 심의 – 전문분야별 심의·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심의 –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기본계획 자문 ▸ **2020.4.12. 2차 위원회 개최** –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빅데이터 시행계획 보고 – 개방 심의 관련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▸ **2020.11.16. 3차 위원회 개최** – 서울시 빅데이터 정책시행 추진경과 보고 – 서울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논의 ▸ **2021.10.29. 4차 위원회 개최** –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등 심의 –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 자문 –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체계구축을 위한 스마트서울 펠로우십 추진계획 자문 ▸ **2022.6.9. 5차 위원회 개최** –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심의 –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 자문 – 빅데이터 융합·분석 현황 및 추진계획 자문 – 데이터 개방 현황 및 계획 자문 ▸ **2022.12.28. 6차 위원회 개최** – 서울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심의 – 빅데이터·AI 기반 실시간 도시데이터 고도화 계획 보고 –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(2단계)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– 대시민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사업 결과보고 ▸ **2023.7.7. 7차 위원회 개최** – 서울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심의 – 디지털시장실 전면개편 추진현황 보고 – '23년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 계획 – '22년 서울시 데이터활용 역량진단 결과 보고

※ 빅데이터담당관 내부자료 재구성

■ 종합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,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할 목적으로 설치·운영 중인 '빅데이터위원회'의 존속기한을 관련규정(**붙임1** 참고)에 따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 최근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, 서울시가 이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, 시민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,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(**붙임2** 참고) '빅데이터위원회'의 기능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존속기한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	02-2180-8204
입 법 조 사 관 전재성	02-2180-8205

〔붙임1〕 관련규정(p.7)

〔붙임2〕 빅데이터위원회 위원 현황(p.10)

〔붙임3〕 빅데이터위원회 회의개요(p.11)

붙임1 관련규정

■ 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」

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■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12조

제7조(위원회의 설치절차 등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.

1. 설치 목적·기능 및 성격
2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3. 존속 기한(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(시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가·허가,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5. 회의의 소집 시기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6.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
7.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·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7.24.>

제12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7.24>

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7.24>

■ 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~12조」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「공공데이터법」 제8조 및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서울시에 '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'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1.5.20>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시의원"이라 한다)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,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개정 2018.1.4>

1. 서울시 공무원
2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3. 전문가,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개정 2021.5.20>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서울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8.1.4>

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.<개정 2019.5.16>
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<2018.1.4>]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1.5.20>

1.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·점검에 관한 사항
3. 「공공데이터법」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
4. 「공공데이터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,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
5.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,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,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<2018.1.4>]

제11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·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8.1.4>

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<2018.1.4>]
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개정 2019.5.16, 2023.7.24>

1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
2.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

[제목개정 2018.1.4]

[제11조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<2018.1.4>]

붙임2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현황

(2023년 10월 기준)

구분	연번	성 명	성별	소 속	직 위	주요경력
임용	1	김 진 만	남	서울특별시	디지털 정책관	前, 서대문구 부구청장
임용	2	김 태 명	남	서울특별시	교통 기획관	前, 행정국
임용	3	박 진 순	남	서울특별시	환경 기획관	前, 공공의료추진단장
임용	4	김 혁	남	서울특별시	안전 총괄관	前, 행정국
신규	5	최 진 혁	남	서울특별시의회 (주택공간위원회 위원)	시의원	現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
연임	6	이 선 우	남	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	교 수	前, 가트너코리아 공공 금융 담당 대표
연임 (부위원장)	7	김 지 희	여	동국대학교 인공지능학과	교 수	前, 삼성전자 상무 (인공지능기술/서비스) 前, KT 상무 (빅데이터분석)
연임	8	정 효 주	여	네이버 데이터사이언스	책임리더	前, 삼성 SDS SCM 전략팀 컨설턴트
연임	9	전 종 준	남	시립대 통계학과	부교수	現,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협력단장
연임	10	이 은 경	여	이화여대 통계학과	교 수	前, 울산대학교 임상약리학과 교수
연임 (위원장)	11	황보현우	남	하나금융지주 그룹데이터총괄	상 무	前, 한남대 글로벌 IT경영학과 교수
신규	12	김 광 섭	남	한국통계진흥원	원 장	前, KDI 위촉연구위원
신규	13	황 명 진	남	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공공사회학	교 수	現, 한국인구학회 부회장
신규	14	최 은 정	여	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학대학	부교수	現,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
신규 (부위원장)	15	송 유 정	여	세명대 컴퓨터학부	조교수	前, 숙명여대 ICT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

붙임3 빅데이터위원회 회의개요

□ 빅데이터위원회 1차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18.3.29.(목) 14:00~16:10

○ 장 소 : 서울시청 본관 8층, 간담회장2

○ 참석자 : 9명(위촉직위원 6명, 당연직위원 3명)

○ 주요안건

- 2018 서울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(심의)
- 2018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(심의)
- 공표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적정성(심의)
-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기본계획(자문)
- 전문분야별 심의·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(심의)

□ 빅데이터위원회 2차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19.4.12.(금) 10:00~12:00

○ 장 소 : 서울시청 본관 8층, 간담회장2

○ 참석자 : 8명(위촉직위원 5명, 당연직위원 3명)

○ 주요안건 : 빅데이터·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데이터 개방 심의방안(자문)

□ 빅데이터위원회 3차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0.11.16.(월) 16:00~17:30

○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, 스마트회의실

○ 참석자 : 10명(위촉직위원 9명, 당연직위원 1명)

○ 주요안건 : 빅데이터 추진경과 보고 및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(자문)

□ 빅데이터위원회 4차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1.10.29.(금) 15:00~17:00

○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, 스마트회의실

○ 참석자 : 8명(위촉직위원 7명, 당연직위원 1명)

○ 주요안건

- 2021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(심의)
- 202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(심의)
-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(자문)
-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서울 펠로우십 추진계획(자문)

□ 빅데이터위원회 5차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2.6.9.(목) 15:00~17:00

○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3층, 스마트정보지원센터

○ 참석자 : 8명(위촉직위원 7명, 당연직위원 1명)

○ 주요안건

- 서울시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및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활성화 시행계획(심의)
-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추진현황 및 계획(자문)
- 빅데이터 융합·분석 현황 및 추진계획(자문)
- 데이터 개방 현황 및 추진계획(자문)

□ 빅데이터위원회 6차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2.12.28.(수) 15:00~17:00

○ 장 소 :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4층, 공용회의실

○ 참석자 : 11명(위촉직위원 9명, 당연직위원 2명)

○ 주요안건

- 서울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(심의)
- 빅데이터·AI 기반 실시간 도시데이터 고도화 계획(보고)
-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(2단계) 추진현황 및 계획(보고)
- 대시민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사업결과(보고)

□ 빅데이터위원회 7차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23.7.7.(금) 15:30~17:30

○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, 공용회의실

○ 참석자 : 8명(위촉직위원 3명, 당연직위원 5명)

○ 주요안건

- 서울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(심의)
- '23년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 계획(심의)
- 디지털시장실 전면개편 추진현황 (보고)
- '22년 서울시 데이터활용 역량진단 결과(보고)